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2022. 1. 25. 규정 제25호

개정 2024. 3. 11. 규정 제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단이 소유하는 동산과 공단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재산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재산

제4조(물품관리체계) ① 이사장은 공단소유의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취득재원에 따라 소관업무의 일부를 분장하여 분임물품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은 경영기획부장으로 하며, 물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감독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담당으로 하며, 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진다.
3.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각 부장으로 하며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물품관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기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야 한다.

제8조(계정과목의 관리) ① 입고물자는 저장품계정 또는 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② 저장품계정으로 정리할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입, 제작, 환입, 교환, 수증물자 및 불용품

③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물자는 다 같다.

1. 구입후 바로 비유동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자

2. 구입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자

3. 수탁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9조(장부비치) ① 물품출납원은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호 서식 :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2호 서식 : 물품출납원 및 분임 물품출납원이 비치작성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3호 서식 :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4. 도서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기획부장이 비치 작성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비치하는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10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수급관리

제1절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12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부물품분류번호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13조(물품의 표준화)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 3. 11.>

③ 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물품은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4. 3. 11.>

제14조(규격의 제정 등) ① 정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규격서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폐한다.

1. 두서 :규격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격의 종류, 품명, 규격번호, 제정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본문 :규격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자료 및 문서, 필요조건, 검사 및 시험, 포장 및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말미 :두서 또는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 용도, 발주 제원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규격서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규격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유지한다.

④ 규격제정 원칙은 다음에 의한다.

1. 물품의 규격은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최신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공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제15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물품출납원은 공단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의 작성 지침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도말 현재량과 다음 연도 분기별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을 명백히 표시한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성지침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변경한 부분의 수정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각 분임물품출납원은 매분기마다 분기개시 10일 전까지 분기별 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수급관리 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물품출납원은 각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수급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각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매반기 수급실적보고서를 제1항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반기 경과후 6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의 취득제한) ①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아니한 단가 50만원 이상의 비소모품(이하 “중요물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취득한 때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수량, 금액 및 수급계획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하여 지체없이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취 득

제1절 물품조달

제18조(물품구매발주) ①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장은 소정 기준(물품수급관리계획 등)에 따라 소요량을 판단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계약담당에게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품목별 발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저장품목은 당년도 사업계획 및 과거의 사용실적을 기초로 하여 소요량을 판단하여 정기발주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저장품목은 정량발주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공사용물자는 공사계획 및 납기를 감안하여 공사건별로 이를 요구한다.

②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조달순위의 결정) ① 물품조달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공사담당부장이 인정한 긴급공단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재고의 품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재고의 통상적인 청구는 제1,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 ② 물품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긴급청구, 특별청구, 일반청구의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 ③ 물품사용부서 및 조달청구부서에서는 우선권 순위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청구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물품검사 및 검수

제22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및 검수원의 지정) ①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직원이 입회한다. 다만,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4조(검사 및 검수의 실시) ① 검사 및 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계약자의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공장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본 등과 비교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④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검사 검수결과 처리) ① 검사 및 검수자는 검사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검수조서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검사·검수조서 작성시 단가 및 금액 산정은 물품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검사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 후 검사검수조서 사본 1부를 지출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절 재고유지

제26조(재고수준 유지) ①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정수,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고수준은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을 합하여 산출 책정한다. 이 경우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수준은 전기 입고 시점부터 다음 입고 시점까지의 평균소요량으로 일정검토 기간내의 총입고량을 입고회수로 나눈 평균 입고량을 말한다.
2. 안전수준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량의 변동이나 조달소요기간의 변동에 대비하고 품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여유 재고량을 말한다.
3. 조달기간 소요량은 물품의 발주시점부터 입고시점까지의 평균 소요량을 말한다.

제27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이 번잡한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8조(물품의 청구)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소요시기,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과 용도를 기재하여 소속 부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 직

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13호 서식의 물품송부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물품출고의뢰서에 따라 현품을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 별지 제15호, 제16호, 제17호 서식의 물품 출납부 및 관계장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수령) ① 제29조에 의한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출고물품의 운반은 수령부서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인도부서의 책임으로 운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운용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없이 청구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私用)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⑤ 수령한 물품을 공사 도급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의 청구 및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물품의 반납)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수량,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관리

제32조(보관의 원칙) ①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단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공단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도, 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 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공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
2. 보관의 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제33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방법 등에 관한 정비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34조(수선 및 개조물품 등의 처리)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이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 기타 관계직원에게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전환

제35조(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의 다른 분임물품출납원 및 합천군 또는 국가기관, 타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의 기관으로부터 그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단외의 다른 기관으로 관리전환은 불용결정된 물품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6조(관리전환 절차) ① 분임물품출납원 간에 관리 전환할 때에는 소관 분임물품출납원 쌍방이 합의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물품관리 전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분임물품출납원 소속 또는 산하기관 상호간의 사용 전환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의 사용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공단소관 물품을 정부기관, 타정부투자기관 또는 합천군 이외의 타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하거나 이의 기관 소관 물품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37조(유상관리전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하되 장부가격에 의함이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월 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공단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당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합천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제5장 불용품 처분

제1절 불용결정

제38조(불용결정기준) ①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중 공사준공과 동시 발생한 잔재로서 기간 및 장소와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②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신설 2024. 3. 11.>

제39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불용대상 물품조서 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년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다른 물품출납원에게 당해 물품의 소요 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를 위해 불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1.>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40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물품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인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⑦ 채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41조(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되지 아니하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이사장은 합천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등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 ② 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

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4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양여 할 수 없거나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 결과와 매각처분 결과를 매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45조(정기재물조사) ① 공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공단재물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분임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재물조사서 서식에 따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공단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로도도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9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 상호 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승인내용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망실 처리

제50조(손망실보고) 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이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 보고서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등 물품관리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공단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가가 불명확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사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사원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사원이 따로 있을 경우에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 취급 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한다.

3. 연대책임

상급물품관리자 또는 사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자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1차 감독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이 초래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출납담당 또는 분임물품출납담당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제8장 보 칙

제53조(물품의 이동상황 정리등) 본 규정에 의한 장부등에 물품의 이동상황 및 상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2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한다.

제54조(시행내규의 제정) 외자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관한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호, 2024.3.1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3조 관련)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구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 령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 (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생 산	자체제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편 입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국유재산편입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부 생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관 리 전 환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반 납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분류전환으로 인하여 정리하는 경우
기 증	기탁을 받거나 기탁을 하는 경우
출 급	보급지원 또는 사용하도록 출급하는 경우 (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양 여	양여하는 경우(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 여	대여하는 경우(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매 각	매각하는 경우
해 체	해체하는 경우
폐 기	폐기하는 경우
망 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 연 감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급	관급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사용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53조 관련)

물품상태분류기준

구 분	설 명
신 품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요 정 비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 단계 숫자로 구성한다.
 - ④ 연월일 : 생략
 -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규정 제53조 별표 2의 물품정리기준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⑦ 적 요 : 거래상대(부서명, 납품회사명)을 기입한다.
 -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⑨ 품 명 : 정부물품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⑩ 규 격 : 정부물품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⑪ 단 위 : 정부물품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⑬ 단 가 : 생략
 - ⑭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⑮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 ⑯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 한다.
-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품목의 소모품을 이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한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물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⑬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기재요령

-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 ⑥ 정 부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 ⑦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 ⑧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⑨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⑩ 연월일 : 생략
-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규정 제53조 별표2의 물품정리기준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⑫ 단 기 : 생략
- ⑬ 수 량 : 생략
- ⑭ 출 급 : 생략
-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⑯ 운용(수량/금액) : 운영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인이 확인한다.
 -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 ⑥ 등록일자 : 생략
 -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참고사항 : 물품 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14조 관련)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규격서

물 품 명	규 격 번 호	
	제정년월일	
1. 적용 범위 및 분류	(1) 적용 범위	
	(2) 분 류	
2. 적용 자료 및 문서		
3. 필 요 조 건	(1) 재 료	
	(2) 형 태	
	(3) 제조 및 가공	
	(4) 품질, 성능 등	
	(5) 기 타 사 항	
4. 검 사 및 시 험	(1) 검 사 방 법	
	(2) 시 험 방 법	
5. 포 장 및 표 시	(1) 포 장	
	(2) 표 시	
6. 기 타		

[별지 제8호 서식] (제18조 관련)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 :						담 당	부 장	사 장
관	항	세 항	목					
아래와 같이 매입(수리, 제조) 코자 건의 합니다						협 조		
물 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소요경비 추 정 액	용 도	
계								

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 수리, 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부장 (인)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25조 관련)

(전면)

물 품 (검 사 수) 조 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일금	₩	
계 약 체 결 년 월 일	.	.	.
납 품 기 한	.	.	.
검 수 년 월 일	.	.	.
검 수 장 소	.	.	.
납 품 구 분	1. 조달구매 2. 자체제작 3. 건설 4. 수증 5. 기타		
상기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검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물납
 품부
 출등

 물관
 리담
 품담

 물출
 납
 담
 품담

 인
 계
 인

주 : 품목이 2종 이상이거나 분할 납품시에는 이면을 사용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제25조 관련)

검사 및 검수 확인조서

수신 : 물품관리담당

발신 : 분임물품출납담당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검수일자 및 검수자		비 고
				일 자	검 수 자	

상기 물품을 공사자재로 검사 및 검수하였습니다.

검사자 : 부서 직 성명 ㉠

- (1) 레미콘, 아스콘, 투수콘 등 반제품 자재 검사, 검수시 사용하며 물품검사, 검수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별지 제12호 서식] (제29조, 제36조 관련)

청 구 사용전환신청 및 출급증(을)

수신 : ① 청 구 번 호 :

발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③ 품 명	④ 규 격	출 급 사 항			⑧ 출 고 장 소
			⑤ 단가	⑥ 취득금액	⑦ 출급량	
1						
2						
3						
4						
5						
6						
7						
8						
9						
10						
⑨ 위 물품의 (출 급 사용전환)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담당		계	
⑩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물 품 납 담 당						인
⑪ 장부 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분 임) 물 품 출 납 담 당						계

※ 분할 출급 또는 사용전환 승인시 사용

[별지 제13호 서식] (제29조 관련)

물 품 송 부 서

송부번호 : _____

인수증번호 : _____

요 구 서		조 달 요 구 번 호				현 품 인 도		
자 동 보 급 처		자 동 보 급 근 거				장 소		
위 조달요구 또는 자동보급물품을 아래와 같이 송부함.				송 부 처	담 당	부 장	사 장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위 물품의 인수를 승인함.				인 수 처	담 당	부 장	사 장	
위 물품을 검수함.				입회자			인	
				검수자			인	
위 물품의 장부 기입을 확인함.				확인자			인	

- ※ 1. 송부처에서 3부 작성 2부를 현품과 같이 인수처에 송부하면 소정절차를 밟아 1부는 영수로서 송부처에 회송하여 1부는 기록보관 처리함.
 2. 건설자재에 있어서는 4부를 작성 전기 1항에 준하고 1부는 원가계산부서로 회송함.

[별지 제14호 서식] (제29조 관련)

물 품 출 고 의 퇴 서

출 급 증빙서번호	제 호	지시일자			수 령 자 출고장소	
수 신					발 신		
용도사유	귀사(직)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음 물품을 상기 출고장소 또는 수령자에게 출고 하시기 바람.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주) 관급자재등의 납품회사 지시용

[별지 제16호 서식] (제29조 관련)

지급건설자재수불대장

분류번호 : _____

품 명 : _____ 규격 : _____ 단위 : _____ 구입처 : _____

결 재			년 월 일	증빙 서 번호	불 출 처	수 입			불 출			잔 고			비고
이사장	부장	담당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주) 일반관급자재

[별지 제19호 서식] (제36조 관련)

물 품 관 리 전 환 조 서

요구번호 :

승인번호 :

전 환 사 유					인수부서	
	전환 근거		첨부		인계부서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인 계 부 서		인 수 부 서			관 계 부 서		
상기 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기관명 : 물품관리담당 성명 :		상기 물품을 인수코자 합니다. 기관명 : 분임물품관리담당 성명 :			상기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것을 통보함. 기관명 : 물품총괄조정자 성명 :		

- ※ 1. 요구번호는 인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 2. 승인번호는 관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 3. 본조서는 인계부서에서 3부를 작성,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한 후 총괄담당부서에 3부를 제출하면 총괄부서는 소정승인 절차를 밝아 인계인수부서에 각 1부씩 통보함.

[별지 제21호 서식] (제43조 관련)

불용품 (해 체 기) 조서				
관리문서	번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직위 직급	성명
입	회	자	직위 직급	성명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사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품 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별지 제24호 서식] (제49조 관련)

재 물 조 정 승 인 신 청 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발 신 :

물품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재 물 조 정 기관명		②재 물 조 사 일 자		③재 물 조 사 사 유		④물품관 리책임자 직위.성명			
재물조정 대 상 품	구 분	⑤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자원별	⑨ 상태	⑩ 단위	⑪ 수량	⑫ 금 액
	⑬초과품								
	⑭부족품								
⑮재물조정 사 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첨부 :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전 카드)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2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2부.									

[별지 제25호 서식] (제49조 관련)

재 물 조 정 결 과 통 보 서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물품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 하였고 통보합니다.

① 재 물 조정부서명		② 재 물 조사일자		③ 재 물 조사사유		④ 관계물품 출납담당자			
재물조정 대 상 품	구 분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자원별	⑨ 상태	⑩ 단위	⑪ 수량	⑫ 금액
	⑬ 초과품								
	⑭ 부족품								
⑮ 재물조정 사 유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 시는 별지로 한다.)								

- 첨부 :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 전 카드) 1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재물조사 증감내역서 1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1부

[별지 제26호 서식] (제50조 관련)

망 실 훼손 보고서

년 월 일

1	소 속 명										
2	물품관리자 (망실훼손자)	직 위									
		성 명									
3	망실훼손 일지 및 장소										
4	망실훼손물품의 품명, 수량 및 장소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동 상 (공용품인 경우)	원송부	경과 년수	품명	품질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일자	기호								
	망실훼손품의 현시세										
5	망실훼손 원인										
6	평소의 보관상황										
7	망실훼손사실 발견의 동기										
8	망실훼손 사실 발견후의 그 사건에 대한 조치										
9	물품관리자의 책임유무 의 결정 및 변상 명령에 대한 조치										
10	망실훼손이 범죄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 한공소 및 피해액 회수의 조 치여부										
11	기타 참고사항										